

탄소중립연구소 규정

(제정 2023.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부설 탄소중립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탄소중립 분야의 학술 연구활동 지원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설치한 탄소중립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분) 연구소는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정책연구소로 구분한다.

제4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5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관련 사업 및 학제적 연구용역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
2. 민·관·산·학·연이 연계된 협력체제 구축
3.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기구

제6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장: 1명
2. 간사: 1명
3. 감사: 2명 이내
4. 연구원: 약간 명
5. 연구인력: 약간 명
6. 연구소 지원인력: 약간 명

제7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원은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별지 1]의 가입신청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을 승인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간사) ①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연구인력) ① 연구인력은 연구원과 협력하여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용역사업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교수
2. 박사후연구원
3. 특별연구원
4. 연구조원

5. 연구보조원

제12조(연구소 지원인력)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 등의 연구소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제13조(연구센터) ① 연구소는 하부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인력 임용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센터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소속 연구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3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4장 재정 및 감사

제1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간접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 사업 등에 의한 수입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연구소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의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하고,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19조(감사)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직후 1개월 내에 연구소 사업 및 회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는 연구소 간행물 등에 공표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